

# 행 정 자 치 부

## 통 보

제 목 ○○~○○간 도로건설공사(국지도 00호선) 등 공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과)에서는 ① ○○~○○간 도로건설공사(국지도 00호선)를 2006. 3. 14. ○○물산 외 4개사와 323,228,000천원 계약하여 추진 중 현재 30%의 공정이 진행중, ② ○○~○○○간 도로확·공사(지방도 0000호선)는 2006. 6. 30. ○○건설(주) 외 1개사와 34,365,510천원 계약하여 추진 중 현재 46%의 공정이 진행중, ③ ○○~○○간 도로확·포장공사(지방도 0000호선)는 2007. 12. 7. (유)○○건설 외 2개사와 12,649,649천원 계약하여 추진 중 현재 56%의 공정이 진행 중이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중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확·포장사업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

하여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상남도 ○○과에서는 위 현황의 “○○~○○간 도로건설공사”는 최초 계약 시 2006. 3. 15. 착공하여 2013. 3. 15.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총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승인 후 계약기간을 10년 8월 연장하여 2023. 12. 31. 준공 예정으로 계약 후 현재까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63,54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추가로 준공 시 까지 5,595백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간접비는 청구된 사항은 없으나 준공 시 까지 20,800백만 원의 간접비가 필요하며

위 현황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최초 계약시 2006. 7. 7. 착공하여 2011. 7. 6.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상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6년 5월 연장하여 2017. 12. 31. 준공할 예정으로 계약 후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현재까지 2,072백만 원 증액하였고 준공 까지 3,082백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재까지 1,783백만 원의 간접비가 청구되었고 간접비 청구금액을 추정해 볼 때 준공 시 까지 2,384백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감리비는 현재까지 1,250백만 원 증액하였고 추가로 준공 시까지 250백만 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위 현황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7. 12. 7. 착공하여 2012. 12. 6.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상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총5차례에 걸쳐 계약기간 6년 1월 연장하여 2018. 12. 31. 준공할 예정으로 계약 후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현재까지 983백만 원 증액하였고 준공 시 까지 156백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재까지 287백만 원의 간접비가 청구되었고 간접비 청구금액을 추정해 볼 때 준공 시 까지 593백만 원의 간접비가 추가로 청구될 것으로 확인된다.

위 내용과 같이 경남도(○○과)에서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대책소홀과 효율

적인 재정보호 부족으로 위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총 326억 원의 사업비와 감리비 250백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간접비용 발생에 따른 시공사와 분쟁 발생이 우려 된다.

〈 계약 현황 〉

[표] 간접비, 감리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현황

구 분	간접비 증액 (백만 원)		감리비 증액 (백만 원)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백만 원)		비고
	현재까지 청구 비용	준공시 까지 청구비용추정	현재까지 증액 비용	준공시 까지 추가비용추정	현재까지 증액 비용	준공시 까지 추가비용추정	
○○~○○간 도로건설공사 (10년 8월 연장)	-	20,800	증액 없음 (당초 81억원 계약하여 현재까지 34억원 집행)		63,544	5,595	
○○~○○○○간 도로확·포장공사 (6년 5월 연장)	1,783	2,384	1,250	250	2,072	3,082	
○○~○○간 도로확·포장공사 (6년 1월 연장)	287	593	직접감독 시행		983	156	

〈 사업추진 현황 〉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억원)	현재 투입액	사업기간 (당 초)	시공사	공정율 (예산대비)
○○~○○간 도로건설공사 (국가지원지방도)	L=14.34km B=20m (4차로)	4,120	1,590	2006.3.15. 2023.12.31. (2013.3.15.)	○○물산외 4개사	30% (32%)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L=8.13km B=20m (4차로)	935	714	2006.7.7. 2017.12.31. (2011.7.6.)	○○건설(주)외 1개사	46% (76%)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L=2.64km B=9.5m (2차로)	172	105	2006.12.17. 2018.12.31. (2012.12.6.)	(유)○○건설외 2개사	56% (62%)

※ 국·도비 부담률

- 국가지원지방도 : 공사비[90%(국비), 10%(도비)] , 보상비 100%(도비)
- 지방도 : 공사비와 보상비 100(도비)

## 조치할 사항

## 경상남도지사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시 장기간 및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시어 공사가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